

대법원 2018도12630 변호사법위반등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관실(02-3480-1451)

대법원(주심 대법관 이기택)은 2018. 10. 25.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등 사건에서 **피고인의 상고를 기각**하여,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임·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의 누설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, 피고인에 대하여 **징역 5년 6월, 추징액 43억 1,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**하였음(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8도12630 판결)

1.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

▣ 사안의 내용

- 피고인은 정운호 도박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교제·청탁 명목으로 함께 50억 원을 수수하고, 이동찬과 공모하여 송창수로부터 '인베스트 컴퍼니 사건', '이숨투자자문 사건' 수사 및 재판 관련 교제·청탁 명목으로 함께 50억 원을 수수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하였음
- 피고인은 2015. 1. 25.경부터 2016. 1. 25.경까지(2014년 2분기~2015년 2분기) 수입료 6,571,363,636원을 신고누락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함께 667,327,272원의 조세를 포탈하였음

▣ 소송 경과

- 제1심
 -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년, 추징액 45억 원을 선고함
- 환송 전 원심
 - 징역 6년은 그대로 유지하되, 추징 부분만 파기하여 추징액을 43억 1,250

만 원으로 정함

- 대법원(환송판결)

- 주된 혐의인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되, 일부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(정운호로부터 받은 20억 원 관련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포탈)에 대하여 피고인이 신고납부기한 전인 2016. 4. 28.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, 이 부분 공소사실은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, 원심을 판결을 전부 파기하였음

- 환송 후 원심

- 검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공소사실 중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된 ‘정운호 수입료 20억 원 관련 부가가치세 포탈’ 부분을 철회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, 재판부는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면서 나머지 공소사실(변호사법 위반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)은 다시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, 징역 5년 6월, 추징액 43억 1,250만 원을 선고하였음

- 피고인이 다시 재상고함

2. 대법원의 판단

■ 상고이유의 요지

- 피고인이 송창수로부터 받은 수입료 50억 원 중에는 송창수를 비롯하여 송창수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 및 이숨투자자문 주식회사 관련 직원들에 대한 민·형사 사건을 포괄적으로 수임한 수입료도 포함되어 있고,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전반기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세무신고를 하였음에도, 50억 원 전체에 대하여 조세포탈을 인정한 것은 판단누락임
- 송창수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다른 변호사에게 지출한 선임료 등은 피고인의 수익에 해당하지 않고 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함

■ 판결의 결과

-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(☞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 6월, 추징액 43억 1,250만 원 확정)

▣ **판단의 근거**

-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음
- 이 사건 환송판결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소사실 중 정운호로부터 받은 수임료 20억 원과 관련된 2015년 2분기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환송판결에서 그 상고이유가 배척되어 확정력이 발생하였음

3. 판결의 의의

- ▣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로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00억 원대의 수임료를 받아 법조비리 사건인 이른바 '정운호 게이트'에 연루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 6월 및 추징액 43억 1,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판결한 사례